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88 발의연월일: 2024. 10. 2.

발 의 자:김남희·송재봉·송옥주

윤후덕 • 박상혁 • 맹성규

김정호 · 남인순 · 정성호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예방접종 피해 구제를 위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고 인과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을 하고 있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사망과중대 장애 발생을 포함한 수많은 이상반응 신고가 있었지만,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실제 보상을 받은 피해자는 많지 않음.

이에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예방접종 이외의 다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사망, 중대 장애 등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예방접종 피해구제 의 범위를 넓히고자 함(안 제71조).

법률 제 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약품으로 인하여"를 "의약품 투여 후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 투여 이외의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것으로 인하여"를 "후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 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 의 국가보상) ① -----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 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 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 ----의약품 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 투여 후에 예방접종 또는 예방 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 •치료 의약품 투여 이외의 다 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른 명확한 원인이 없이-----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 접종 행위자 및 예방・치료 의 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u>것으로 인하여</u> 발생한 피해로	후에
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